

# 대구대학교와 호남대학교 간의 학술교류에 관한 기본 협정

대구대학교와 호남대학교는 양 대학교에 유익한 학술교류계획에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. 본 협정은 양 대학교에 있어서의 연구 및 교육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, 교류를 통해 양 대학교의 교육·연구분야의 상호이해가 증진된다는 확신 아래, 연구자, 학생, 학술정보, 학술자료, 기타의 교환을 규정한 것이다.

1. 양 대학교는 각자의 학술 및 교육상의 필요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교류 계획을 호혜원칙 하에 추진할 것에 동의한다.
  - ① 연구자(전임교수 및 연구원) 교환
  - ② 학생(학부학생 및 대학원생) 학점교환
  - ③ 학술정보, 학술자료의 교환
  - ④ 학술 정기간행물의 교환
  - ⑤ 공동 연구계획
  - ⑥ 학생교류
  - ⑦ 체육활동의 교류
  - ⑧ 상호의 시설 제공
  - ⑨ 양 대학교가 합의한 기타 학술 교류
2. 본 협정에 의거한 각 교류계획의 실시는 양 대학교가 개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며, 본 협정은 양 대학교 책임자간에 교환되는 문서에 의해서 발전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.
3. 본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이 아니며 학술협력의 특성 내지 교류 지침을 기술한 것이다. 즉, 본 협정의 실시로 인하여 양 대학교의 자치가 방해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양 대학교 어느 측에도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.
4. 본 협정은 양 대학교의 어느 편에 의해서 어느 때라도 폐기될 수 있으나, 그와 같은 경우 협의를 거쳐야하며 타 대학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한다.
5. 본 협정은 2부씩 작성되며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
6. 본 협정은 양 대학교 대표자가 본 협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폐기하지 않는 한 3년간의 기간씩 자동 연장되고, 쌍방의 협의에 따라 합의내용을 수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1998년 6 월 18 일

대 구 대 학 교  
총 장 박 윤 흔

박 윤 흔

호 남 대 학 교  
총 장 이 대 순

이 대 순